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산업재해보상보험
전담 정무직 본부장 신설〉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63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홍배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5. 02. 18.
3. 회부연월일 : 2025. 0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임. 기존 21대 국회에서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순한 관리감독기능이 아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논의되었음.

산업안전보건과 같이 공공성,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이 높이 요구되는 분야는 부처 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본부를 신설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비슷한 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 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전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산업안전보건본부
부를 신설하고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배치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업무를 전문화·고도화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체계성을 갖추는 등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관
리 체계를 재조정하고자 함(안 제41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를 전담하는 정무직(차관급) 본부장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 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u><신 설></u>	제41조(고용노동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 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u>

최근 ESG 경영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조성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업무 범위는 확장 추세이나,¹⁾ 산업현장의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2022.1.27. 시행)의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산업현장에

1) 정부는 2021년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K-ESG 가이드라인 진단 항목 구성표상 사회(S) 영역 중 기업의 안전보건 관련 지표는 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총 기록 재해율, 아차사고 빈도율 등으로 구성됨.

서 인명피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그 발생 건수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²⁾³⁾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기준 총 재해자 수는 136,796명으로 전년 대비 6,448명(4.9%)이, 재해율은 0.66%로 전년 대비 0.01%p(1.5%)가 각각 증가하였고, 재해율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손실액은 전년 대비 2조 9,923억원(9.0%) 증가한 36조 4,247억원에 달하는 수준임.

2)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조사 대상이 되는 사고사망은 ('22년) 644명 → ('23년) 598명 → ('24년) 589명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현황】

업종별	전업종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계	50인(억) 미만	50인(억) 이상	계	50억 미만	50억 이상	계	50인 미만	50인 이상	계	50인 미만	50인 이상
'24년	589	339	250	276	181	95	175	75	100	138	83	55
'23년	598	354	244	303	181	122	170	96	74	125	77	48
'22년	644	388	256	341	226	115	171	82	89	132	80	52

유형별	계	떨어짐	부딪힘	끼임	맞음	갈림·뒤짚힘	무너짐	화재·폭발	감전	넘어짐	기타*
'24년	589	227	50	66	83	46	20	44	22	2	29
'23년	598	251	79	54	67	43	34	30	10	3	27
'22년	644	268	63	90	49	44	35	44	13	5	33

주) '기타'는 산소결핍, 익사, 화학물질 누출·접촉, 이상온도 접촉, 베임, 찢림 등
자료: 고용노동부

3) “줄지 않는 산업현장 사망사고… 근로자도 안전의식 몸에 익혀야”, 서울신문, 2023.9.4., “반복되는 공장사고…안전 사각지대 여전한 대한민국“, 헤럴드경제, 2024.11.30.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2022년 및 202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총괄)】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증감률(%)
사업장 수(개소)	2,945,136	2,976,026	-30,890	-1.0
근로자 수(명)	20,637,107	20,173,615	463,492	2.3
재해자 수(명)	136,796	130,348	6,448	4.9
재 해 율(%)	0.66	0.65	0.01	1.5
사망자 수(명)	2,016	2,223	-207	-9.3
사망만인율(‰)	0.98	1.10	-0.12	-10.9
업무상질병자 수(명)	23,331	23,134	197	0.9
근로손실일수(일)	63,845,877	60,701,773	3,144,104	5.2
산재보상금(백만 원)	7,284,941	6,686,486	598,455	9.0
경제적손실액(백만 원)	36,424,705	33,432,430	2,992,275	9.0

주: 1) 경제적손실액: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의 5배로 추정

2) 재해자 수: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요양승인일 기준)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 미보고 적발 사망자를 합산한 수입

※ 재해자 수에는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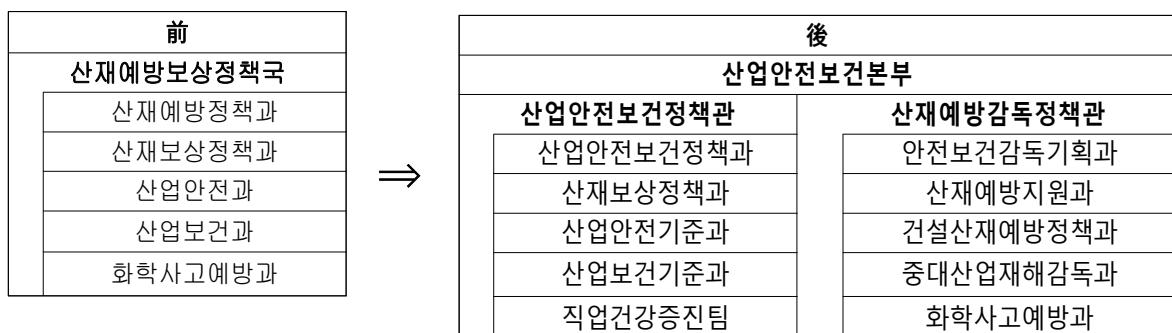
3) 사망자 수: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 미보고 적발 사망자를 합산한 수입

※ 사망자 수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자료 : 2024년판 고용노동백서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단일 차관하에 관리하는 체제⁴⁾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4)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함께 고용노동부에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실장급 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신설됨.



자료 : 고용노동부

역할 및 전문성이 강화되지 못하는 등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차관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집행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의 규정형식이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임.

현행법 제2조제3항5)에서는 실장·국장·과장의 명칭을 본부장·단장·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부장은 최대 실장급에 대응하는 보조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각 부처의 본부장은 업무특성 및 관할범위에 따라 실장급 또는 국장급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4장(행정각부)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 행정안전부(재

5)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난안전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의 본부장을 각각 정무직으로 두면서,⁶⁾ 현행법 제7조제2항⁷⁾에서는 이들 본부장에게 차관과 함께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규정형식은 현행법 체계에 부합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둘째,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부 업무의 기능, 기구·인력 측면 등에서 현재 실장급 보조기관을 차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음.

개별 행정부처에 두는 ‘본부’는 사업단위별로 업무완결이 가능하고 정책 집행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보조기관 중 하나로, 조직편성의 자율성·유연성 확대를 위해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부처별 ‘본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⁸⁾는 차관급 본부를, 법무부·고용노동부·

6) 「정부조직법」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34조(행정안전부<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7)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우주항공청·경찰청 등은 실장급 본부를 각각 두고 있으나,

차관급 본부가 설치된 4부의 조직 및 인력 규모를 살펴보면, 보조기관인 ‘과’ 단위 기준으로 10~47과, 인력 기준으로 122~622명 등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중앙행정기관별 ‘본부’ 운영현황】

부처	본부명	본부장 직급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정무직(차관급)	하부 조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정무직(차관급)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정무직(차관급)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	외무14등급	
법무부	교정본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가등급)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가등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가등급)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가등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치안정감	

8)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의 설치근거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외교전략정보본부) ① 외교전략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영문 명칭은 "Vice Minister for Strategy and Intelligence"로 표기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외교전략정보본부) ①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4등급으로 한다.

부처	본부명	본부장 직급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가등급)	소속 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가등급)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가등급)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나등급)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가등급) 또는 장성급 장교	
	미래전력사업본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가등급) 또는 장성급 장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나등급)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나등급)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가등급)	

자료 : 행정안전부

다만, 산업안전보건본부를 기존 실장급에서 ‘정무직(차관급)’으로
격상 시 조직의 위상 강화와 아울러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정무직 본부장은 특정 정책분야 총괄·조정 등 전문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경우에 도입·운영하는 제도로써, 현재 수행 중인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능 및 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차관급 본부 vs 산업안전보건본부 기구·업무·인력】

(2025. 3. 31. 기준)

구분	차관급				고위‘가’급
	과학기술 혁신본부	재난안전 관리본부	통상교섭 본부	외교전략 정보본부	산업안전 보건본부
기구	1본부장 1조정관 3국 14과 1팀	1본부장 3실 9국 1관 1상황실 47과	1본부장 1차관보 2실 9국·관 30과 2팀	1본부장 1대사 4국 10과	1본부장 2관 9과 1팀
업무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연구개발사 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등	안전 및 재난 정책의 수립·총괄·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등	통상, 통상교섭 및 총괄·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 등	외교정책, 인태전략, 북핵, 국제안보,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군축 등	산업안전보건, 산재예방감독,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관리 등
인력	122명	622명	316명	92명	80명

자료 :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참조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사고 예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취지, 현행법 체계상 측면, 정무직(차관급) ‘본부’ 설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고용노동부에 근로조건의 기준 및 근로감독 등을 전담하는 근로감독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⁹⁾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39

9) 의안번호 제2207436호, 2025. 1. 10. 발의